공정위, 주차장 관리규정의 표준약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화)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97. 10. 21 표준약관으로 승인하였다.

이번에 표준약관으로 승인된 「주차장 관리규정」은 시간주차요금을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단위로 세분화하고, 주차권 분실시 입증된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작은 금액을 징수하며,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익일부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80%를 약정기간 종료 익일에 반환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표준약관에 따르면 차량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나 관리자에게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차내 소지품도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차량은 그대로 있고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차내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동 표준약관은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한국주차사업협회와 협조하여 전국의 주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서 영업하는 민영 주차장 사업자들이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및 공영주차장의 운영시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표준약관에서 주차요금 계산의 합리화와 차량 및 소지품의 도난·훼손시 주차장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명백히 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업자도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써 별도로 약관을 작성하는 수고와 비용을 덜고, 주차장 이용자와의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 표준약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공영주차장의 운영에도 반영되어 주차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요 골자 ◈

(1) 주차요금 계산단위의 세분화

- 시간주차요금 계산단위를『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로 명시하여 실제주차시간보다 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불합리한 점 개선

(2) 시간주차권 분실시 요금계산의 합리화

- 주차권 분실시 입차시간을 입증하면 그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 입증할 수 없을 때는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주차요금 중 작은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관리자와 이용자간의 이익 형평 도모

(3)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 반환

- 이용자가 차량수리,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 익일부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80%를 약정기간의 종료 익일에 반환.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주차장이용권의 교부로 갈음

(4) 관리자의 입차시간 기록의무 및 주차권 기재사항 명기

- 입차시간의 입증이 용이하도록 관리자에게 입차시 입차시간 기록을 의무화
-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인 주차요금, 이용시간, 전화번호를 주차권에 기재하도록 함

(5)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짐

(6) 차내 소지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 관리자에게 보관한 차내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짐
- 차내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짐. 다만, 차내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

(7) 귀중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 귀중품은 이용자가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귀중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8) 관리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차량 등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

(9)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

-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 통지하고,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